

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43,656,955	16,309,709
일반회계	476,497,691	14,294,931
특별회계	67,159,264	2,014,778
공기업특별회계	59,103,470	1,773,10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070,530	572,11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1,448,940	943,46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584,000	257,520
기타특별회계	8,055,794	241,674
강릉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519,165	15,575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47,600	13,428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2,467,370	74,021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923,863	87,716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390,750	11,723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1,299,500	38,985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특별회계	7,546	226

제 2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1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2010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7,030,925 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11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9,8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